화원 월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알림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화원 월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및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.

2023년 3월 20일

해 남 군



1. 목적

화원 월호지구는 이상 강우 및 태풍으로 인한 외수 범람으로 주택 및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천정비를 통해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, 단면 부족으로 월류 되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상습적인 재해 피해로부터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함.

2. 주요 내용(주민의견 수렴)

- 가. 행정예고 기간: 2023. 03. 20. ~ 2023. 04. 09.(20일간)
- 나. 의견제출 기간: 2023. 03. 20. ~ 2023. 04. 10.(21일간)
- 다. 공고방법: 해남군청 홈페이지(www.haenam.go.kr) 및 화원면사무소 게시판라. 관련근거
 -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(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(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)
 -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(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·공고 등)
 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3(예고내용 등)

3. 의견 제출

- 가.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남군 안전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제출기한: 2023년 04월 10일 18:00까지
- 다. 제출방법: 우편 또는 팩스(061-530-5589)
- 라. 제 출 처: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(안전교통과 재난관리팀)
- 마. 문 의 처: 안전교통과 재난관리팀 이준호(☎ 061-530-5455)
- 바. 처리방향: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"의견 없음"으로 처리함.

4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지

지구명	01 -1	지 정 개 요				
	위 치	지정면적 (m²)	유형	등급	지 정 사 유	비고
화원 월호	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762번지 일원	683,956	침수 위험	나	· 하천제방 월류 방지 및 침수 예방을 위한 지구 지정	신규

5. 지구 지정 후 정비계획

지구명	사업시기	사업예산 (백만원)	사 업 내 용	비고
화원 월호	2024년 ~ 2031년	39,100	 축제 L=5,791m 교량 6개소 배수통문 1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 등 	

※ 사업 시기는 현장 여건 및 예산(국비) 지원 계획 등에 따라 변동됨.

붙임 1. 지구현황 1부.

- 2. 의견제출서(서식) 1부.
- 3. 지형도면 1부.
- 4. 편입토지조서 1부. 끝.